

결정문

사건번호: KR-2400266

신 청 인: 디비아이엔씨

(대리인:특허법인 우인 최성우 변리사)

피신청인: Maureen Cruz

분쟁 도메인이름: <dbjjang79.com>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디비아이엔씨(주소: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23, 7층)

피신청인: Maureen Cruz(주소: 24 Daedeok-ro, Nma-gu, Daegu, Republic of Korea)

분쟁 도메인이름은 "dbjjang79.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미국에 소재한 도메인등록기관인 **Wix.com Ltd.**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24년 11월 5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24년 11월 5일 사건을 접수하였다.

센터는 2024년 11월 13일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Wix.com Ltd.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24년 11월 21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센터는 2024년 11월 22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ss7ss7ss77@gmail.com)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4년 12월 11일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2024년 11월 22일 등기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주소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측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센터는 2024년 12월 12일 센터의 보충규칙에 따라 이대희를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24년 12월 12일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4년 12월 13일 1인 행정패널을 구성하고 이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제36류의 주식 정보제공업, 주식중개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  DB >에 대한 상표권자이고, 이와 동시에 제35류 및 제42류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이나 웹사이트 개발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에 대한 상표권자이다.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인 <dbjjang79.com>은 2023년 4월 22일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개설된 웹사이트에서는 주식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는 등 주식이나 증권거래 관련 정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첫째, 분쟁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  DB >, <  >와 주요부가 유사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거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피신청인이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상표인 <  >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것, 둘째,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과 관련 있는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셋째,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과 <  >을 웹사이트에서 파비콘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 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주장하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것을 신청하고 있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5.1 절차 진행 언어

UDRP 절차규칙 제11조 (a)항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계약에서 사용된 언어이며, 다만 패널은 행정절차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이트는 영어 이외에도 한국어를 비롯한 20여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조정을 한국어로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본 패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 절차상의 언어로 한국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하기로 한다.

5.2 규정 제4조 (a)항 해당 여부

UDRP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성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이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dbjjang79.com>인데,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록 상표는 <DB> 또는 <>이다. 분쟁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연관되는 부분은 'DB'인데,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는 <DB>이다. 따라서 UDRP가 적용되기 위한 첫째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서는 <dbjjang79.com>이 <DB>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먼저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표장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메인이름에는 문자나 숫자가 사용되는데, 신청인의 상표는 <DB>이고 이미지 <>은 도메인이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dbjjang79.com>과 <DB>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의 상표는 <DB>가 아니라 <DB>이고, DB는 데이터베이스(db)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약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DB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DB> 이외에 <jjang>이나 <79>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신청인은 신청인의 표장 중 일부만이 분쟁 도메인이름과 관계되어 있을 뿐이고, 분쟁 도메인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표장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분쟁 도메인이름 <dbjjang79.com>과 신청인의 상표 <DB>를 비교하더라도 양자가 동일하다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에 신청인의 상표, 특히 널리 알려져 있거나 저명한 상표를 모두 포함시키고 이에 '일반명칭'을 덧붙인 경우 UDRP 목적상 혼동이나 유사성을 인정하는데 충분하다. 그런데 분쟁 도메인이름 <dbjjang79.com>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DB>라는 문자에 '

뛰어나다' 등을 의미하는 '짱'을 영어로 표현한 <jjang>과 숫자 <79>가 부가된 것이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 < DB >는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DB>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본 패널은 UDRP 규정 제4조(a)항 (i)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B. 소결

UDRP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i) 상표·서비스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성, (ii) 피신청인의 권리, (iii)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 및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UDRP 규정 제4조 (a)항 (i)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나머지 2개 요건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본 패널은 제4조 (a)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 <dbjjang79.com>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패널은 UDRP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등록한 분쟁도메인이름 <dbjjang79.com>에 대한 신청인의 말소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이 대 회

결정일: 2024년 12월 19일